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과 그 對應

姜 二 秀

(崇實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목 차〉

I. 序 說

1. 製造物責任의 國際的 擴大와 그 影響
2. 本稿의 목적 및 범위

II. 技術과 製造物責任

1. 製造物責任의 基本構造
2. 貿易去來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

III. 美國에서의 製造物責任의 動向

1. 立法動向
2. 免責事由(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의 尙변)
3. 製造物責任의 危機와 責任緩和立法의 提案

IV. EC諸國의 動向

1. EC指針에 의한 製造物責任의 統一化
2. EC指針의 無過失責任·對象·因果關係
3. 責任主體의 擴大와 連帶責任
4. 免責事由

V. 國際製造物責任에 대한 企業의 對應

1. 製造物責任의 豫防對策
2. 製造物責任訴訟對策

VI. 結 論

I. 序 說

1. 製造物責任의 國際的 擴大와 그 影響

소비자물품이 제조, 판매, 유통되어 소비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어느 나라의 소비자도 그 건강과 생활을 외국기업의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경우에 외국기업이 시장에 반입한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가 身體傷害 또는 財産損害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같은 기업의 국제적인 製造物責任(product liability)의 문제는 글로벌한 국제무역의 발전과 개인적 소비자권리의 高揚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는 1개국 이상의 複數國에서 제조, 유통, 판매된 결합제품에 의하여 人身傷害, 재산손해 및 경제적 손실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의 결합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나라마다 달라, 어떤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으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식이 박약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製造物責任訴訟을 제기한 경우에 그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다르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제조물책임문제는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기업의 증가에 의하여 더욱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을 선두로 하는 국제거래의 진전에 따라 사람과 물품의 해외이동의 용이성은 각국에서 많은 제조물책임소송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다국적기업으로서는 해외시장에 현지법인 등의 사업활동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적 제조물책임문제로서 대처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¹⁾

제조업자, 특히 다국적기업인 제조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시장에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가장 엄격한 製造物責任法制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최대의 소비자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어느 나라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本稿의 목적 및 범위

제조물책임은 미국 및 EU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종래까지 기업보호라는 차원

1) Feedman, Warren, International Products Liabil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P.2.

에서 제조물책임의 시행이 유보되어 왔으나, 최근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제조물책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제조물책임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나라의 상품수입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국내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특히 對美, 對EU輸出의 확대와 해외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우리 기업은 國際製造物責任의 내용과 최근동향, 운용실태 등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선진외국의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적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도가 뒤늦게 정비되었을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외국 수입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의 제조물책임추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연구는 “國際마케팅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미국과 EU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제조물책임의 동향과 운용실태를 비교, 분석한 후, 우리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技術과 製造物責任

1. 製造物責任의 基本構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끊임없이 상호 경쟁하면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첨단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제품을 국제시장에 반출하고, 경제적 경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제조물에 결함(defect)이 존재하여 사용자(소비자)가 그 제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생명·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자와 수입업자(경우에 따라 유통업자도 포함)를 責任主體로서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는 법칙이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다.

일반적인 민사책임은 不法行爲의 過失責任(過失責任主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측의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바로 여기서 제조자의 과실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칙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근거로서 ① 제조자에게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과 자력이 있으므로 제품의 위험코스트를 부담시킴으로써 위험회피의 인센티브로 삼을 수 있고, ② 이러한 위험코스트도 신제품의 개발코스트의 일부로서 신제품의 판매 후 회수할 수 있으며, ③ 기업은 코스트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製造物責任保險에 가입함으로써 그 손해를 填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貿易去來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미국·유럽으로의 수출상품과 현지공장에서의 제품에 관하여 당사자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에 대처하기 위한 수출계약조건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 2000. 1. 12. 공포, 2002. 7. 1. 시행)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에 수입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동법 제2조 제3항 가) 제조물책임은 앞으로 무역거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관한 제조물책임은 開發危險의 抗辯(기술상의 면책)에 관한 상대방(수출기업)의 기술수준, 판결의 집행력과 求償時의 상대국의 法整備狀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수입업자의 수입의욕의 감퇴를 촉진할 우려가 없지 않다.

III. 美國에서의 製造物責任의 動向

1. 立法動向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不法行爲上の 無過失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이 확립되었던 것은 1963년의 Greenman v. Yub Power Products사건(59 Cal. 2d 57, 377 P. 2d 897)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1965년에 美國法律家協會(American Law Institute)가 이 판례의 법리를 조문의 형태로 재구성한 第2次不法行爲法 Restatement [Restatement(Second) of Torts] 402 A조, 402 B조는 미국 대부분의 州에서 채택되었던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입법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聯邦法은 존재하지 않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州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각 州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²⁾ 제조물책임의 법적근거 [제조물책임소송의 訴訟原因(cause of action)]로서는 過失責任(negligence)³⁾, 保證責任(warranty)⁴⁾, 嚴格責任(strict liability)⁵⁾의 3

2) <http://www.law.cornell.edu/topics/products-liability.html>

3) 이것은 전통적인 不法行爲責任論의 입장이다. 판례는 손해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피고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또 계약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제조회사(BUICK)와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였던 피해자(MacPherson)의 사건(1916)을 계기로 하여 피해자에 의한 과실의 입증은 불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MacPherson v. Buick Motor Co., 217 N. Y. 382, 111 N. E. 1050 (1916).

가지가 있다.

2. 免責事由(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가해자인 제조업자는 제기된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항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완전한 항변이 될 수 있는가 또는 그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항변에 그치는가는 각 州에 따라 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다.

(1) 技術水準(state of the art)

기술수준의 항변문제는 제조시의 과학적 내지 기술적 수준에 의하면, 위험의 인식과 사고회피가 가능한가 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로서, 이것은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항변이 된다.(제조시의 기술수준으로서는 그 이상의 것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 이에 대해 엄격책임에 있어서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부정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1982년의 뉴저지州最高法院의 Beshada사건⁶⁾은 엄격책임에서는 제품의 위험성을 문제로 삼는 것이며, 제조자측의 주관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기술수준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2년 뒤인 1984년 同州의 최고법원은 Feldman사건⁷⁾에서 醫藥品에 대하여 기술수준 항변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위의 Beshada사건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2) 寄與過失과 比較過失

영미법의 전통적인 common law의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위도 손해발생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때에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로서 항변으로 인정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여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적으로 부정되어 피해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되기

4) 明示保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이론이 판례(위의 Greenman 사건, 1963)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한편, 默示保證은 승용차의 예를 들면 직접적인 구매계약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에게도 보증이 미치며, 또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일방적인 免責約款은 무효라고 하는 판결(Henningsen사건, 1960)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 32 N. J. 358, 161 A. 2d 69 (1960)

5) 제조자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嚴格責任理論이 위의 Greenmant사건에서 인정되었다.

결함의 내용은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sign), 指示·警告상의 결함 또는 마케팅상의 결함(defective marketing)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6) Beshada v. Johns Manville Products Corp., 90 N. J. 191, 447 A 2d 539 (1982)

7) Feldman v. Lederle Labotaries, 97 N. J. 429, 479 A. 2d 374 (1984)

때문에 근래에 이르러 제정법에 의하여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채택하고 있는 州가 많다.

비교과실은 原告間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대륙법에 있어서의 過失相計와 유사하다. 비교과실에는 순수하게 과실비율에 의하여 배상액을 조정하는 형태와 원고의 과실비율이 피고의 과실과 동등 내지 하회하는 경우에만 배상액을 조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가 있다.

(3) 危險引受(assumption of risk)

이것은 피해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서 위험을 인수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第2次不法行爲Restatement 402 A조 註釋 n은 피해자측의 과실에 의한 엄격책임의 면책을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위험인수에 의한 엄격책임의 면책을 긍정하고 있다.

위험인수는 엄격책임에 있어서도 면책사유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 면책사유로 인정한다면, 기여과실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과실과 같이 부분적 면책에 그치게 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비교과실을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는 피해자의 위험인수의 기여도에 상응한 감액을 인정함으로써 비교과실과 並列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4) 誤用・改造

오용은 제조자가 예기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개조는 제조자의 손을 떠난 후, 제조자가 예기할 수 없는 제품의 변경이 소비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용과 개조의 범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의도하였던 사용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제조자가 의도하였던 사용이 아니더라도 그와같은 오용과 개조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인 한, 제조자는 안전장치나 警告에 의하여 대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 製造物責任의 危機와 責任緩和立法의 提案

(1) 製造物責任訴訟의 증가와 懲罰的 損害賠償制度

미국에서는 근래 제조물책임소송의 件數와 그 判決額[陪審의 評決(verdict)額]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제조물책임소송 때문에 도산상태에 이르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질이 나쁜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손해배상 이외에 懲罰的賠償(punitive damage)⁸⁾이 부과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高額의 손해배상을 생기

게 하는 원인이다.⁹⁾

(2) 保險會社의 영업정책 실패

미국사회는 訴訟社會로서, 이와같은 사회적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보험업에서는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두 차례에 걸쳐 제조물책임보험의 인수거절과 보험료의 급격한 양등에 의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제조물책임위기 또는 보험위기).

사고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추구를 두려워한 미국내의 제조업자들은 公園으로부터 각종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제품의 개발을 중지하고, 스포츠의 防護器具가 미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조물책임위기는 제조물책임의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의 영업정책 실패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이것은 보험회사간의 과당경쟁→보험료의 덩핑→저금리시대의 도래→보험회사의 수익률 악화→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圖式이 급격한 보험료의 양등과 보험의 인수거절이라는 보험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견해이다. 미국과 동일한 무과실의 제조물책임입법을 제정하였던 EC諸國에서는 이와같은 보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製造物責任改革

미국에서는 1970년대의 제1차제조물책임위기 이후에 연방수준에서 제조물책임법제를 개혁하려는 개혁법안이 몇 개 제안되었다. 이러한 개혁법안은 모두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즉, 의회에 제안되어 있는 입법안을 보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징벌적 배상액의 제한 등에 관한 것이다.

1979년에 상무성이 발표하였던 “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MUPLA)”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연방법은 아니고, 그 때까지 제조물책임이 각 州法에 의하여 규제되는 주법관할영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州法の ”모델법“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다.¹⁰⁾ 그러나, 이 모델법은 일부 주에서 부분적

8)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OECD가맹국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영연방제국에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PP.23-24 및 Atiyah, P.S.(1987), " Tort Law and the Alternatives: some Anglo-American Comparisons", 1987 Duke Law Journal 1002, 1024 참조.

9) Grimshaw v. Ford Motor [119 Cal. App. 3d 815, 174 Cal. Rptr. 385.]사건에서는 1970년대 초에 Ford社가 제작하였던 자동차의 안전무시의 개발방침이 의견대립 때문에 퇴사하였던 동사의 기술자에 의하여 폭로되었는데, 배심은 Ford社에 惡意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실의 손해배상 350만달러 이외에 1억 2,500만달러의 懲罰的損害賠償을 명하였다(총액 1억 2,500만달러는 지나치게 고액이기 때문에 그 후에 법원이 징벌적손해배상을 현실의 손해배상과 동액의 350만달러로 감액하였다.).

10) <http://www.law.cornell.edu/topics/products-liability.html>

으로 채용되는데 그치고,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연방법에 의한 개혁 법안이 매년 연방의회에 제안되어 있으나, 최종적인 입법으로 성립되지는 않고 있다.

각주에서도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불법행위개혁이 행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래보다 제조물책임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이 성립되고 있다.

IV. EC諸國의 動向

1. EC指針에 의한 製造物責任의 統一化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한 각국은 제조물책임을 법제화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EC각국 기업의 경쟁조건의 불평등을 가져 옴으로써 유통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불명확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1985년 EC각료이사회에서는 EC指針(EC Directive)[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85/374/EEC) (“결함제품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협정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지침”)]을 채택하고, 가맹국에 대해 국내입법을 정비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EC지침이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것은 과학기술이 진보하여 대량생산·대량소비가 행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시스템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않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편이 抑止效果, 損失分散效果의 점에서 제조자와 소비자간에서의 위험배분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관념이 그 전제로 되어 있다. 결국, EC지침은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생기는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소비자보호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자의 면책이라는 상반되는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EC指針의 無過失責任·對象·因果關係

(1) 무과실책임의 채택

EC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fault)의 채택이다. 고도의 전문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방식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EC지침의 기본관념으로 되어 있다(前文·1조). 다만,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결함”의 존재와 “결함”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엄격책임과 거의 동일하나,

제조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면 항상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과는 다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결함의 존재가 전제로 된다는 것과 결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 EC지침은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소비자기대기준을 채택하고, 그 것을 판단할 때에 ① 제품의 표시 ②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용도 ④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6조 1항).

미국의 기술수준의 항변에 유사한 개발위험의 항변도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¹¹⁾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수준에서는 제조자가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하면, 면책된다(7조 (e)).

(2) 對象

EC 지침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動産에 한정되며, 제1차농산물·狩獵物도 대상으로 하는가는 각국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및 개인적 사용에 제공되어 있는 재산 [500유럽통화단위(ECU)까지는 자기부담으로 공제] 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손해(예컨대, 위자료·영업용재산)의 배상은 EC지침의 대상외로서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人身損害에 대해서도 대량으로 동종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극히 방대하게 되어 제조자의 부담이 가혹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제조자의 인신손해의 총액을 7,000만유럽통화단위 이상의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선택을 각국에 인정하고 있다.

(3) 因果關係

EC지침은 성립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3. 責任主體의 擴大와 連帶責任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된 완성품 또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된 구성부품 또는 원재료에 결함이 존재하는 한, 제조과정에 관여한 모든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또 제품을 EC내에 수입한 자 또는 성명, 상표 기타 표지를 붙여 자기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없는 제품을 공급한 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확대되어 있다(3조).

다음에,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복수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그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손해의 완전한 배상을 청구할

11) OECD, op. cit., 1995, PP. 19-20.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5조)

4. 免責事由

책임주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다음 6가지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입증한 경우에 국한된다. ① 당해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에 놓이게 하지 않았다는 것 ② 상황을 고려 해 본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에 놓이게 한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것 중 어느 하나의 개연성이 있을 것(결함의 流通時 不存在 抗辯) ③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판매 등 경제적 목적의 업무를 위하여 제조·유통시키지 않았을 것 ④ 공적 기관의 강제적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됨으로 인하여 결함이 생겼을 것 ⑤ 제품을 유통에 놓이게 한 시점에서의 과학·기술수준에서 보아 제조자가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개발위험의 항변) ⑥ 부품제조자의 경우에는 그 결함이 그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설계(design)에 기인하거나 또는 제품의 제조자가 제공한 지시(instructions)에 기인한 것일 것(7조).

V. 國際製造物責任에 대한 企業의 對應

1. 製造物責任의 豫防對策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기업의 PL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된 결과로 기업의 경영기반을 위협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 각국 등으로부터의 PL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책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법제도에 따른 제조물책임대책을 각각 수립해 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제도, 즉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를 전제로 하여 대책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제조물책임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을 살펴보려고 한다.

(1) 企業에 있어서의 組織體制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제조물의 안전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문을 배치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全社的으로 다룰 專門委員會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제조물의 품질보증, 특히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으며, 全社的인 동위원회는 제조물안전성기준의 설정과 제조물안전심사의 실시를 주된 임무로 한다. 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관계부문의 책임자를 全社的

으로 망라하여야 한다.

신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소정의 안전성기준에 의하여 당해 사업부문의 최고책임자가 판매개시의 가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이 제품의 안전성의 관점에서 곤란한 경우에 전사적 전문위원회에 당해 제품의 안전심사를 의뢰한다. 전사적 전문위원회에 설치된 審査團이 안전심사를 실시하여 판매의 가부를 권고하며, 사업부문의 최고책임자가 이 권고를 고려하여 판매의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심사단의 권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며, 사업부문의 최고책임자가 그 권고를 무시하고 제품의 판매를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위의 제품안전성을 관장하는 부문은 전사적 전문위원회의 운영조직으로서 제품안전성기준 및 안전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적인 製造物責任豫防對策

기본적인 제조물책임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은 製造物安全對策(product safety; PS)과 製造物責任防禦·訴訟對策(product liability defence; PLD)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와같은 PLP는 기업이 과거부터 축적해 왔던 이익을 사용하여 거액의 제조물책임클레임·소송의 발생과 제품회수(recall)로부터 기업을 구출함으로써 기업의 위험관리에 이바지하게 된다.

여기서는 제조물안전대책을 설명하고¹²⁾, 제조물책임방어·소송대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기업의 제조물안전대책¹³⁾은 제품 내지 기술의 특성, 업종, 기업규모, 경영정책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예방대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내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서 제품안전성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둘째로, 기업내에 있어서의 정보전달로서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교육을 全社的으로 실시한다. 제품안전정보를 활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제품품질클레임에 대응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또 관계업계의 내외에 있어서 제품안전에 관한 사고사례를 조사

12) “안전에 대한 개념”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으로서의 PL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영식, “製品安全性의 관점에서 본 製造物責任法”,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2000. 3) 所載 論文(<http://www.product-liability.net/c0lumn/article.html>) 참조.

13) 위의 PLD는 사후의 대응책이므로 제조물책임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대기업의 PLP는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와 QA(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활동과 동일한 추진·전개에 의하여 PS대책을 중심으로 한 PLP전반에 대한 활동이 그 과제로 되어 있다.

본래 사용자는 제조물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기대 또는 요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제조업자 등의 기업측으로서는 대응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향과 기대·요구수준에 따른 제조물의 사용단계에 있어서의 안전확보는 기업측으로서는 수동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강하다. 그러나, 본래 기업은 그 사회적 사명·책임으로부터 그 제조물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종래 사용단계에 있어서의 제조물의 신뢰성을 포함한 기능중시의 경향이 큰 QC·QA에 의한 대응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예방대책으로서 는 제조물안전에 입각한 PLP라는 개념에 따라 기업의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불가결하다.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로서 활용한다. 셋째로, 기업내에서의 監視로서 제품안전 심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구체적인 감시항목으로서 신제품의 시장에의 공급개시시의 감시, 제조공정변경시의 감시, 불량품관리제도 및 異物混入對策에 있어서의 감시를 들 수 있다. 넷째로, 제품책임방지를 위한 제품의 警告로서 위험내용의 명시, 위험회피수단의 명시, 警告文의 우선적 표시 등을 하도록 지도를 한다.

(3) 계약에 의한 危險의 配分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공급선인 가공업자 또는 판매업자(distributor)와의 계약에서 당해 제조물의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면책(indemnity)을 받거나 또는 그 책임을 분담시킬 수도 있다.

(가) 免責約款: 계약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제한·배제는 제조물책임문제를 고려하는 경우에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특히 면책약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제품안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冷蔵車輛의 냉장고의 온도가 높아져 적재된 돼지고기가 부패하였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냉장고제조업자간의 계약에 의한 책임의 한정·면책약관을 엄격히 해석하여 냉장고제조업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¹⁴⁾ 또 옥수수 種子의 發芽不良에 의한 수확손해사건에서 법원은 제조업자의 면책약관을 인정하지 않았다.¹⁵⁾ 한편,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제빵회사의 빵이 燒失하였던 사건에서 법원은 제빵회사와 스프링쿨러회사간의 책임제한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스프링쿨러회사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였다.¹⁶⁾

(나) 타인에의 責任轉嫁, 求償權: 이 가운데에는 부품, 원재료제조업자에 대한 求償訴訟, 下都給會社에 대한 구상소송, OEM, private brand 제조업자에 대한 구상소송, 수입업자에 의한 해외제조업자에 대한 구상소송, 제조물임보험과 관련된 代位訴訟 등이 포함된다.

(4) 製造物責任保險(PL insurance)¹⁷⁾

제조물책임보험을 부보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제품의 제조물책임위험의 평가, 보험료의 高額化, 사업경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적절한 보험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로, 부보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대상제품 및 대상국을 특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대상비용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응급수당 등에 소요된 비용,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품 자체의 손해, 리콜비용 등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책임한도

14) The Elite Professionals, Inc. v. Carrier Corp., Kansas주 항소심, 1992. 3. 6.

15) Gary Schmaltz v. Abner T. Nissen, South Dakota주 항소심, 1988. 11. 9.

16) Leon's Bakery v. Grinnel Corporation, 연방항소심 (제2순회구), 1993. 3. 31.

17)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보험제도의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동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金光彬·李基亨, “製造物責任保險의 活性化方案 研究”,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3권 2호, 1998. 10, 所載, P.375 이하 참조.

액으로서 對人賠償, 代物賠償 및 總限度額을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자기부담액이 될 면책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위험은 보험에 의하여 모두 填補될 수 있다고 할 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제조업자는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 즉 격심한 코스트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고액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제조물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腐心하고 있으며 또 보험프로그램 그 자체에도 付保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¹⁸⁾

2. 製造物責任訴訟對策

(1) 소송에 대한 사전대책

제조업자는 일상의 사업활동 중에 항상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전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요 사전대책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제조물의 품질 내지 안전과 관련된 文書保存프로그램(document retention program)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보존프로그램은 소송 뿐만아니라 외국정부의 조사에 대한 사전대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제출요청을 받은 문서가 왜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가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서의 제출은 미국의 소송에서 文書開示(document production)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서보존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보존하여야 할 문서의 특징, 보존하여야 할 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대상문서가 방대할 수도 있으므로 그 보관에 있어서도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 필요한 때에 문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된 문서보관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은 소송에 대한 사전대책이라기 보다는 全社的인 經營資料管理의 하나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제조물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불만·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단순하고, 경미한 클레임처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가 또는 대형화될 제조물책임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등 금전적 해결을 되도록 단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한다면, 제조물책임은 보다 더 심각하게, 또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바로 이 단계에서 제조업자로서의 기술적·전문적 판단 뿐만아니라 조속한 사업경영상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18) 예컨대,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의 문제가 있으며, 또 懲罰的損害賠償과 계약에 의하여 확대되는 손해배상책임은 付保의 대상 밖에 있다.

(2) 소송이 제기된 후의 대책(訴訟防禦)

(가) 기업내의 대응책 실시: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기업내의 대응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은 訴狀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 법률면에서의 평가, 반론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법률면에서의 논거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적 방어대책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구축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하다. 당해 외국(필요한 때에는 한국의 변호사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訴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검증하는 동시에 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한 후, 상대방 입장의 강약을 고려하여 전략·전술(방어, 반론, 항변 등)을 법률이론으로 구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기업에의 영향,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면서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의 소송에 대한 방어책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을 얻어야만 가능할 만큼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게 된다. 회사의 의사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고, 그 대응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우수한 변호사의 기용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 社內 프로젝트 팀의 구성: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은 예컨대, 제조물과 관계될 때에는 법무, 설계, 제조, 생산관리, 판매 등의 스태프를 중심으로 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 제조물의 설계, 제조, 판매를 담당하였던 라인부문 등이 합류하게 된다. 이 팀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은 기업내의 리스크관리대응책의 일환으로 미리 설정하여 법이론, 조사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이 팀은 제조물책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통하여 조직으로서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다) 법령, 규칙의 이해: 개개의 재판에 대한 법률상의 전문지식은 기업에 있어서는 법무스태프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층 기타 관계자는 소송을 담당할 자사의 변호사에게 회사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변호사가 대응의 진전에 관하여 회사에 충고,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 납득한 후에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실제의 대응은 변호사와 법무스태프와의 밀접한 공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순수한 法廷節次·法廷技術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法務部門의 충실: 법무부문의 충실은 法務스태프人材의 확보, 조직으로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충실은 국제거래 분쟁의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社外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회사의 입장에서 再考하여 최고경영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법무스태프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우수한 법무스태프없이 사외의 변호사만으로 분쟁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기업으로서 그 만큼 위험이 크다. 법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소송을 위한 법규·전략·전술·法廷技術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국제소송을 통하여 국제기업활동의 기본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 우수한 변호사의 육성: 기업의 소송대응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대응책을 고려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사라 하더라도 국제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없이 대응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서는 국제거래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자사의 비즈니스활동의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야 하며, 또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은 변호사로부터 재판의 여러 국면에 따라 자문을 받고, 또 상호간에 대응책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으나, 결국 대응책에 관한 최종결정권자는 기업 자신이지, 결코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바) 소송절차의 요소와 제조물안전대책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

(a) 和解: 화해가 제조물책임문제의 대응책 중에서 중요한 대책의 하나임은 명백하나, 화해를 하는 경우에도 제조물안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화해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과 당해 사고의 원인을 설계단계에 소급하여 검허하게 탐구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4輪 오토바이를 12세의 소년이 운전하던 중에 언덕의 정상부근에서 顛倒된 重傷事件에서 원고와 피고인 제조업자는 법관의 관여 아래 화해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회사의 警告義務違反이 문제되었었다.¹⁹⁾

(b) 缺陷不存在의 증명: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결함부존재의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률론으로서는 결함개념 및 결함인정기준과 관련되나, 결국 제조물안전팀이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c) 제조물사고를 발생시켰던 제조물의 폐기처분: 이러한 제조물의 폐기처분은 제조물안전과는 관련이 적으나, 제조물책임문제의 대응, 특히 소송방어로서는 중요하다. 또 폐기처분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안전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박약하나, 제조물사고를 일으켰던 제조물을 검증하는 것은 제조물안전을 위한 방항제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물론이다.

예컨대, 가정용 개스調理器의 화재사고에 의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인 보험회사가 사고발생의 가정용개스조리기를 폐기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제조업자는 그 제품을 조사하여 화재발생의 다른 원인을 발견하였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결함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하는 데 있어서 원고가 결함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제조업자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²⁰⁾

한편, 트럭용 鋳鐵의 폭발에 의한 기계공의 失明事件에서 당해 鋳鐵은 소송제기 이전에 폐기처분되었으나, 법원은 그 鋳鐵의 제출은 결함의 입증에 반드시 불가결한 것은 아니더라고 하였다.²¹⁾ 개스衣類乾燥器, 개스溫水器에 의한 화재발생

19) Christopher Erickson v. America Hona Motor Co., 미네소타주 항소심, 1990, 5. 8.

20) Shelbyville v. Sunbeam Leisure Products, 일리노이주 항소심, 1994. 6.10.

21) Willie B. Daniels v. GNB Incorporated, 미시시피주 최고법원, 1993.12. 16.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는 데, 법원은 피고인 제조업자의 略式判決申請을 인정하였던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²²⁾

(d)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의 증명: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예컨대, 백화점내에서 발생하였던 엘리베이터 화재사건에서 피고인 제조업자는 화재발생으로부터 사고발생까지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중단이 있었다는 뜻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였다.²³⁾ 또 예약시스템·디스플레이의 단말기로부터 放射된 전자파방사선에 의한 癌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제품의 위험성과 상해간의 인과관계의 증명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제조업자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²⁴⁾

(e) 事實推定法則: 사실추정법칙(res ipsa loquitur)은 피해의 원인이 피고인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아래에 있으며,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과실없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는 법칙이며,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이 법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칙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이 부정되었던 사건으로서는 소니(SONY)의 컬러TV화재로 인한 물적 손해사건이다.²⁵⁾

(f) 외국기업에 대한 訴狀의 送達: 미국소송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소장의 송달에 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원고의 서류우편에 의한 일본기업에 대한 소장의 송달을 유효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며,²⁶⁾ 또 일본제조업자의 보트엔진 정지에 의한 사망사고의 사건에서 법원은 번역하지 않은 소장의 송달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⁷⁾

(g) 適正 裁判地: 적정 재판지는 소송원인의 일부라도 발생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의 本社所在地는 재판지로서 적절하다. 설계가 행해졌던 곳을 재판지로 피고가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²⁸⁾

(h) 裁判管轄權: 외국기업이 당해 州에서 그 제품이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은 경우는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minimum contact가 존재한다고 한 판례(오스트렐리아産의 石綿(asbestos)에 의한 상해사건)가 있다.²⁹⁾

22) Tory v. Kampgrounds of America, Inc., 펜실베니아주 항소심, 1990. 10.

23) R. H. Macy & Co. v. OTIS Elevator Co., 오하이오주 최고법원, 1990. 5. 23.

24) Barbara Hays v. Raytheon Co., 聯邦地法(일리노이), 1992. 11. 12.

25) Mark Raines v. Sony Corp. of America, 미네소타주 항소심, 1994. 11. 8.

26) DeMoss v. City Markets Inc. (Showa Denko KK), 聯邦地法(고다), 1991. 3. 21.

27) Greenfield v. Suzuki Motor Co., 聯邦地法(뉴욕), 1991. 10. 29.

28) Wilson Gross v. GM, 미시간 최고법원, 1995. 3. 8.

29) In re Minnesota Asbestos Litigation (Johns-Manville), 미네소타주 항소심, 1995. 12. 12).

VI. 結 論

우리나라에서도 개방화·세계화의 물결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제조물책임법분야에서도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1999. 12 국회통과, 2000. 1 공포), 동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제조물책임제도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³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종전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대응책 강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기업책임의 엄격화는 확실히 기업에 대하여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러나, 생산 및 유통의 기계화·복잡화, 제품 자체의 고도화·복잡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過失責任에 의한 처리는 공평성을 잃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이 賠償의 형태로 구제하고, 그것을 제품가격 속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기업책임의 엄격화에 의하여 제조물의 안전성이 향상됨으로써 사고의 抑止效果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嚴格責任理論은 미국에서 발전되어 EU제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브라질, 필리핀 등 30개 가까운 나라에서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엄격책임이론의 합리적인 존재이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특히 對美輸出製品에 의한 訴訟經驗 등을 통하여 엄격책임이론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향은 국제거래의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법이론으로서의 엄격책임의 의의와 미국 고유의 문제를 구별하여 고려해 본다면, 엄격책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EC指針에 대응하여 1988년 3월 이후 엄격책임을 도입하였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엄격책임의 적용예는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각 기업은 품질관리에 대하여 한층 더 신경을 쓰고, 고객에 관한 기록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제조물책임에 수반되는 코스트는 ① 결함개념의 변경, 책임엄격화에 대응하여 행해진 제조물의 안전화나 피해방지를 위한 지출과 ②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또는 그것을 전보하기 위한 PL보험료의 지출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자는 본래 제조물책임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업으로서 당연히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며, 현재 대부분의 업종·기업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현행 不法行爲責任의 테두리를 초월하는 지출을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따르는 기업의 가장 큰 불안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과 비용지출을 하더라도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된다

30) 강창경/박성용/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9. PP.3-5., PP.94-102 참조.

고 하는 賠償코스트의 불확실성의 발생에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제조물안전대책에 관한 지침의 상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감소시키고, 또 안전장치나 경고레이블을 충실히 하는 등의 피해방지대책은 본래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때에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사항이다.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多額의 배상금지출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제조물안전대책에 관한 허탈감을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방지노력 보다도 피해가 생긴 경우에 訴訟技術의 驅使에 의하여 自社에게 유리하게 화해를 하고, 적정한 배상금지출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금지출이 PL保險에 의하여 처리된다면, 지급보험금의 통계처리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보험료 상승의 형태로서 기업에게 발생한 코스트의 증가분은 보험회사의 손실로서 누적되게 된다.

제조물책임제도의 실현은 제조물안전대책을 위한 코스트와 제조물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코스트의 제조물가격에의 轉嫁에 의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문제는 이 2개 코스트의 균형에 있다. 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배상코스트만이 상승하는 愚는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정책의 중점이 “생산자의 이론”으로부터 “소비자의 이론”으로 옮겨 감에 따라 기업은 제조물피해에 대해서도 그와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公害規制가 環境保全技術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경영상 마이너스요인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특히 제조물안전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법이론도 당연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법이론을 어떻게 함으로써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또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법이론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가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정착, 그에 따른 과제의 해결, 앞으로의 운용방향과 기업의 대응책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ABSTRACT

Products liability refers to the liability of any or all parties along the chain of manufacture of any product for damage caused by that product. This includes the manufacturer of component parts (at the top of the chain), an assembling manufacturer, the wholesaler, and the retail store owner (at the bottom of the chain). Products containing inherent defects that cause harm to a consumer of the product, or someone to whom the product was loaned, given, etc., are the subjects of products liability suits.

The goal of products liability system should be to maximize consumer welfare by efficiently providing just compensation for injuries incurred and deterring future injuries without unreasonably impeding the suppl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Some advanced countries, apart from relying on products liability systems, also apply other policies and legislation directly aimed at the safety of the consumer. The application of general safety policies as well as products liability rules is not costless. An efficient system will not eliminate risk from society. An efficient system ... that maximises consumer welfare ... maximises the benefits while minimising the costs.

Products liability claims can be based on negligence, strict liability, or breach of warranty of fitnes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laim is based. In 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circumstances, it should be stressed that inter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should consider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International enterprises should have a correct perception about products liability which is to contribute the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Products liability system creates incentives that influence behaviour and performance in ways that are desirable, such as more diligent monitoring to prevent defective products from reaching the market-place. At the same time, any liability system will impose burdens that are undesirable, such as greater costs imposed on business and consumers and reduced availability of consumer goods. The concern for society is to balance. The ideal situation is where the cost imposed on producers of goods and services pushes them to a desirable level of care but not so far that producers reach undesirable level of caution that may deprive consumers unnecessarily of the benefits from new and innovative products.

※참 고 문 헌※

- 강창경/박성용/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9.
- 金光彬·李基亨, “製造物責任保險의 活性化方案 研究”,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23권 제2호 所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PL법 이렇게 대응하라(무공자료 95-50), 1995
- 박영식, “제품안전성의 관점에서 본 제조물책임법”,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2000. 3월호 所載(<http://www.product-liability.net/column/article.html>)
- 한국PL센터, 연구자료(<http://www.kplc.or.kr>)

- 東京海上研究所, 國際製造物責任法, 商事法務研究會, 1995
- 中村弘, 製造物責任の基礎的研究, 同文館, 1997
- 安田火災海上保險, PL=製造物責任, 講談社, 1995
- 小林秀之, 新版PL訴訟, 弘文堂, 1995
- , 製造物責任法, 中央經濟社, 1994
- , 新製造物責任法大系 I, II, 弘文堂, 1998
- 北川俊光, 企業のPL對策—米國のPL判例に學べ, 日科技研出版, 1995
- , “製造物責任法の下における製品安全ガイドラインの構築の試み”, 法政研究 63권 3-4 合併號, PP.951-1021, 九州大學, 1997

- Byrom, Robert Milton, Product Liability of United States Aircraft and Component Manufacturers, McGill University(Canada), 1993
- Geistfeld, Mark Allen, The 'Powerless' Consumer. The Product Warranty and Strict Product Liability: An Analysis of Liability Rules and the Market Control of Product-Related Losses, Columbia University, 1990
- Shilaes, Carole, Use of Chance - Constrained Programming Techniques to determine Optimal Insurance Deductable Levels(Product Liability), Arizona State University, 1995
- Sisselman, Ronald, The Judicial Regulation of Safety: An Evaluation of Modern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Rules (Liability Law),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co, 1990
- Steinberg, Brett Alan, The Effects of Proactive-Disclosure of Increasingly Unfavorable Characterologic Information on Verdicts, Compensatory Damage Awards, and Perceptins of Trial Characters in a Mock Product Liability Cas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8

- Freedman, Warren, International Products Liabil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 , ed., Product Liability: An International Manual of Practice, Oceana Publications, 1990
- OECD, Safety of Consumer Products, Policy and Legislation, 1990
- ,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 Owen, David G./Montgomery, John E./Keeton W. Page, Products Liability and Safety, Foundation Press, 1999